

**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신청서**

※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   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30조의9제1항, 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7제1항에 따라 위와 같  
이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[ ] 또는 변경인증[ ]을 신청합니다.

신청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

## 처 리 절 차

